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안 (김민기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787

발의연월일: 2020. 9. 11.

발 의 자:김민기·조승래·이원욱

송기헌 · 김병욱 · 서동용

강선우 · 이탄희 · 김진표

안규백 · 김병기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

군사경찰은 군의 기강과 질서 및 안전을 유지하는 군의 경찰작용을 통해 군이 전투력을 보존·발휘하여 궁극적으로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직무를 수행하고 있음.

그러나 군사경찰의 군 행정경찰직무는 그 근거법령이 미흡하거나 근거법률이 없어 지휘권의 행사방법으로만 판단함에 따라 오남용의소지가 있는 실정임. 군사경찰의 군 행정경찰권 행사의 근거법령이라할 수 있는 「군사경찰령」, 「군사경찰무기사용령」은 일부 용어 변경 외에 특별한 개정 없이 1949년 제정 당시의 직제와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어 현실과 괴리감이 있으며 타 현행 법률(군사법원, 형사소송법, 군인사법)과 충돌 등 위헌소지가 있으며 과도한 법익 침해 소지가 있어 실질적으로 사문화된 상태로 방치되고 있어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입법적 조치가 시급한 상태임.

군사경찰의 행정경찰직무의 법적 근거 미비로 인하여 법치주의 원칙이 준수되지 않음으로써 지휘권의 적법한 행사보장이 되지 않고 있으며, 장병의 인권 및 기본권 보호에 있어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.

이에 군사경찰의 군 행정경찰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치주의 원칙을 확립하고 장병의 인권 및 기본권 보장을 충실히 하기 위하여 「군사경찰의 직무에 관한 법률」을 제정함으로써 군사경찰의 군 행정경찰직무와 관련된 문제점을 근본적이고 종합적으로 해결하고자 함.

주요내용

- 가. 군사지역 등에서의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인 등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군사지역 등에서의 질서 유지 및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(안 제1조).
- 나. 이 법에 규정된 군사경찰의 직무는 원칙적으로 군사지역에서 군인 등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함(안 제4조).
- 다. 군사경찰장비·군사경찰장구·분사기 등 군사경찰무기는 통상의 용법이나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, 안전교육과 안전검사를 실시하도록 함(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).
- 라. 군사경찰장구·분사기 등 또는 군사경찰무기를 사용한 경우 그 책임자는 사용일시·장소 등을 기록하여 보관하도록 함(안 제10조).
- 마. 체포·구속되거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판결 또는 처분을 받은

사람 등을 수용하기 위하여 군사경찰부대에 군교정시설을 운영하도록 함(안 제11조).

- 바. 군사경찰이 군사지역에서 교통·운항질서 유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2조).
- 사. 군사경찰은 수상한 거동 등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신분증명서의 제시 등 직무질문을 할 수 있으며, 6시간이내에서 군사경찰부대 또는 검문소 등에 머물게 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3조).
- 아. 군사경찰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할 때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고를 하고,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4조).
- 자. 국가는 군사경찰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사람에 대하여 손실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며, 손실보상신청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(안 제15조).

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안

- 제1조(목적) 이 법은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사경찰의 적법한 직무집행을 보장하고 군사지역 등에서의 질서유지와 안전 도모 및 인권 침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 - "군사경찰"이란 「군인사법」에 따른 군사경찰의 장교·준사관·부 사관·병(兵)과「군무원인사법」에 따른 군무원으로서 군사경찰부대 에 소속되어 군사에 관한 경찰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.
 - 2. "군인 등"이란 「군인사법」 및 「군무원인사법」의 적용을 받는 군인 및 군무원과 이법에 따른 군사지역에 거주하거나 일시적으로 방문하는 민간인(외국인을 포함한다)을 말한다.
 - 3. "군사지역"이란 「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」 제2조제1호·제 2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과 같은 법 제5조제1항제1호가목 의 민간인통제선 이북(以北)지역 및 「국방·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방·군사시설을 말한다.
- 제3조(군사경찰의 직무범위와 지휘·감독) ① 군사경찰은 군사경찰부 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의 지휘·감독 하에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.

- 1. 군사상 주요 인사(人士)와 시설에 대한 경호·경비 및 테러 대응
- 2. 군사상 교통·운항질서의 유지 및 위해의 방지
- 3.「군사법원법」 제44조제1호에 규정된 범죄(이하 "범죄"라 한다)의 정보수집·예방·제지 및 수사
- 4. 군수용자 관리
- 5. 군범죄 피해자 보호
- 6. 경찰, 검찰과 상호 협력
- 7. 주한 미군 및 외국 군 군사경찰과 국제 협력
- 8. 그 밖에 군 기강 확립·질서 유지를 위한 활동
- ② 국방부장관은 군사경찰 직무의 최고 지휘·감독자로서 군사경찰 에 관한 정책을 총괄하기 위해 예하에 국방부 조사본부를 둔다.
- ③ 각 군 참모총장은 각 군 군사경찰 직무의 지휘·감독자로서 예하 부대의 군사경찰 직무를 총괄하기 위해 군사경찰실(단)을 둔다.
- ④ 군사경찰부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은 소관 군사경찰 직무를 관장하고 소속 군사경찰을 지휘·감독한다.
- ⑤ 군사경찰인 병(兵)은 소속 군사경찰부대 간부(제2조제1호에 명시된 장교·준사관·부사관 및 군무원)의 지시를 받아 군사에 관한 경찰의 직무를 보조한다.
-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직무범위와 지휘·감독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- 제4조(적용대상) ① 이 법에 따른 군사경찰의 직무는 원칙적으로 「군인사법」 및 「군무원인사법」의 적용을 받는 군인, 군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.
 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는 군사지역에 거주하 거나 일시적으로 방문하는 민간인(외국인을 포함한다)에게도 적용한 다.
-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부터 제8조까지는 「군형법」 제1조제4 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내국인·외국인에게도 적용한다.
- 제5조(군사경찰장비의 사용) ① 군사경찰은 직무수행 중 군사경찰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서 "군사경찰장비"란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음주측정기, 속도측정기, 감식기구, 해안감시기구, 통신기기, 차량·선박·항공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비를 말한다.
 - ③ 군사경찰은 군사경찰장비를 함부로 개조하거나 임의의 장비를 부착하여 통상의 용법과 달리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생명·신체에 위 해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.
- 제6조(군사경찰장구의 사용) ① 군사경찰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필요한 한 한도에서 군사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.
 - 1. 현행범이나 사형·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·도주의 방지

- 2.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·신체에 대한 방어 및 보호
- 3.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(抗拒)의 제지
- ② 제1항에서 "군사경찰장구"란 군사경찰이 휴대하여 범인검거와 범죄제지 등 직무수행에 사용하는 수갑·포승·경봉·전자충격기(총) 및 방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와 기구를 말한다.
- 제7조(분사기등의 사용) ① 군사경찰은 범인의 체포·도주의 방지,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·신체·재산 또는 군사지역에 대한 현저한 위 해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현장책임자의 판단으 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분사기 및 최루탄(이하 "분사기등"이 라 한다)을 사용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서 "분사기 등"이란 「총포·도검·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분사기와 최루 등의 작용제를 말한다.
- 제8조(군사경찰무기의 사용) ① 군사경찰은 범인의 체포·도주의 방지,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·신체에 대한 방어 및 보호,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제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한도에서 군사경찰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사람에게 위해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.
 - 1. 「형법」에 따른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에 해당하는 때
 - 2. 사형·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거나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군사

경찰의 직무집행에 대하여 항거하거나 도주하려 할 때

- 3. 체포·구속영장과 압수·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 본인이 군사경찰의 직무집행에 대하여 항거하거나 도주하려고 할 때 또는 제3자가그를 도주시키려고 군사경찰에게 항거할 때 이를 방지·체포하기위하여 군사경찰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
- 4. 범인 또는 소요행위자가 무기·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군사경찰로부터 3회 이상의 투기명령 또는 투항명령을 받고도 이 에 불응하면서 계속 항거하여 이를 방지 또는 체포하기 위하여 군 사경찰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
- ② 제1항에서 "군사경찰무기"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도록 제작된 권총·소총·도검 및 공용화기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기를 말한다.
- ③ 군사경찰은 군사경찰무기를 사용할 때 무기사용을 야기한 자와 관계없는 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, 주위의 정황으로 보아무기의 사용이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즉시 그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.
- ④ 군사경찰은 제1항에 따라 군사경찰무기를 사용한 때에 그 사유 및 상황을 지체없이 소속 군사경찰부대장에게 보고하고, 소속 군사 경찰부대장은 소속 부대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.

- 제9조(군사경찰장비 등에 대한 안전교육 등) ① 국방부장관은 군사경찰을 대상으로 제5조에서 제8조까지에 따른 군사경찰장비·군사경찰장구·분사기 등 및 군사경찰무기(이하 "군사경찰장비 등"이라 한다)의 사용방법 및 안전에 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 - ② 국방부장관은 군사경찰장비등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.
 - ③ 군사경찰부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자에게 군사경찰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거나, 안전검사를 받 지 않은 장비를 사용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.
 - ④ 군사경찰장비 등의 사용 및 안점검사의 기준, 사용방법 및 안전에 관한 교육의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0조(사용기록의 보관) 제6조에 따른 전자충격기(총), 제7조에 따른 "분사기 등", 제8조에 따른 군사경찰무기를 사용한 경우 그 책임자는 사용일시·장소·대상·현장책임자·종류 및 수량 등을 기록하여보관하여야 한다.
- 제11조(군 교정시설 운영) ① 군사경찰부대는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체포·구속되거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판결 또는 처분을 받은 사람을 수용하기 위하여 군 교정시설을 운영한다.
 - ② 군 교도소 및 미결수용실의 시설기준, 운용방식 등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2조(교통운항질서 유지 등) ① 군사경찰은 군사지역에서 안전하고

원활한 교통운항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교통·운항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및 제거하여야 하며, 「도로교통법」 제44조 및 제45조와「해사안전법」 제41조 및 제41조의2, 「항공안전법」 제57조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단속할 수 있다.

- ② 제1항 후단에 따라 단속되는 민간인이 군사경찰의 지시에 응하지 않거나 이미 위반하여 「도로교통법」및「해사안전법」,「항공안전법」상 처벌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사건을 관할 지방경찰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.
- ③ 군사경찰은 군사지역 밖에서의 군사훈련이나 군사작전 등 군에서 관할하는 활동을 위하여 이동하는 부대의 안전을 위해서 「도로교통법」 제5조에 규정된 신호 또는 지시를 할 수 있다.
-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직무수행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「도로교통법」 및 「해사안전법」, 「항공안전법」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3조(직무질문 및 동행요구) ① 군사경찰은 군사지역에서 수상한 거 동, 그 밖의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또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(이하 "직무질문"이라한다)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신분증명서의 제시 등 신원확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- ② 군사경찰은 그 장소에서 직무질문을 하는 것이 당사자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군사경찰부대 또는 군사경찰부대에서 운용하는 시설, 검문소 등(이하 "군사경찰부대등")에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당사자는 군사경찰의 동행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.
- ③ 군사경찰은 직무질문을 하는 때에 무기 또는 흉기의 소지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.
- ④ 군사경찰은 직무질문을 하거나 동행을 요구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, 동행의 경우에는 동행 장소를 밝혀야 한다.
- ⑤ 군사경찰은 당사자가 제2항에 따른 동행 요청에 응하여 동행을 한 경우 즉시 당사자의 소속부대장과 가족 또는 친지, 그밖의 연고자에게 동행한 군사경찰의 신분, 동행 장소 및 동행목적과 이유를 직접 알리거나, 본인으로 하여금 가족이나 친지 등 연고자에게 즉시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.
- ⑥ 군사경찰은 6시간을 초과하여 동행한 당사자를 군사경찰부대 등에 머물게 할 수 없으며, 당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동행을 해제하여야 한다.
- ⑦ 당사자는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경우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신체를 구속당하지 아니하며, 그 의

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.

- 제14조(범죄의 예방·제지) 군사경찰은 군사지역에서 제3조제1항제3호의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,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·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.
- 제15조(손실보상) ① 국가는 군사경찰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사람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.
 - 1.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사람이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(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사람이 군사경찰의 직무집행에 자발적으로 협조하거나 물건을 제공하여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를 포함한다)
 - 2.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사람이 자신의 책임에 상 응하는 정도를 초과하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
 - ② 제1항에 따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,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.
 - ③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신청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둔다.
 - ④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, 보상금액, 지급절차 및 방법, 손

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.

제16조(벌칙) 이 법에 규정된 군사경찰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친 군사경찰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